

#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I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547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15년 6월 12일
- 라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18일

### II. 예비비 지출 개요

-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의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27억 6,305만원으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

#### < 예비비 지출 내역 >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지출결정액	지 출 액	집행잔액	집행잔액 발생사유
계	12,763,052	12,763,052	-	
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	700,000	700,000	-	전통시장 전기안전 취약지점 점검 및 긴급보수
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	100,000	100,000	-	노후화된 전통시장 43개소 긴급안전진단 및 안전조치
과오납 반납	11,963,052	11,963,052	-	'서울신문 컨소시엄'에 매각한 DMC 일부 필지에 대한 사업포기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지급.

### Ⅲ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- 2014 회계년도 경제진흥본부의 예비비는 총 3건에 예산 지출액은 127억 6,305만원임.
- 예비비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“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”(행정1부시장 방침 제186호)에 따라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긴급 안전 진단과 전기안전 취약지점 등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.
- 전통 시장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전기, 가스, 소방 등 안전시설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, 이 같은 취약점이 개선되도록 각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긴급보수사업으로 모두 7억원이 지출되었으며,
- 또한, ‘전통시장의 구조안전진단 등’을 위해 재난위험시설 13개소와 열악한 노후시설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30개소 시장에 대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 1억원이 지출되었음.

- “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”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난위험시설물,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보수와 구조안전 진단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.
- 그러나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,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에 예비비의 지출을 제한하고 있음. 또한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, 정규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시급성과 기존예산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, 최소한의 범위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 시설물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나, 상기 2건의 사업은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충분히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성, 다른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‘과잉적인’ 대응으로 지적될 수 있음.
- 한편, ‘과오납 반납’ 사업은 그 동안 ‘투자유치과’에서 추진해 온 DMC 사업용지 매각사업의 일환으로, DMC 단지내 E2-2필지(서울신문 사업용지)가 ‘서울신문 컨소시엄’에 매각되어 매매계약을 체결(‘08.10.30) 하였음.

< DMC 단지내 첨단업무시설 : 상암디지털 프레스센터 건립 >

- 계약일자 : 2008.10.30.
- 계약자 : 서울신문 컨소시엄
- 계약금액 : 14,863,454,500원(148억 6,345만원)  
(계약금 1,486,345,000원 + 잔금 13,377,109,500원 3년 6회분납)
- 면적 및 용도 : 2,923㎡ / 첨단업무시설(상암디지털프레스센터)

- 그러나, 장기간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해 '서울신문 컨소시엄의 상암디지털 프레스센터' 건립계획이 회원사 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충돌 등으로 주 사업자인 '서울신문 컨소시엄'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서울시에 매매계약 해제(2014.1.23)를 요청해온 것임.
-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잔금(약 161억원)에서 공제금액(61억 6천만원)을 제외하고, 반환이자(약 20억 2천만원)를 포함한 119억 6,300만원에 대한 반환금을 일반회계 예비비 재원의 활용을 통하여 반환조치를 한 것임.
- 이는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고 조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, 추가적인 반환이자가 발생되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,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속히 반환시킨 것으로 파악되었음.